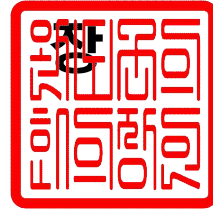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완 도 군 의 회 의



1. 조 례 명 :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 조례

2. 발 의 자 : 박 재 선 의원

3. 제정이유

-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안 제4조)

- 독서 문화 진흥사업(안 제5조)
-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안 제6조)
- 포상(안 제7조)

5. 관련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6. 조례안예고기간 : 2025. 10. 2. ~ 2025. 10. 10.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2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7,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2팀(전화: 061-550-59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 조례」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회장 귀하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균등한 독서 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과 독서자료 확보
3. 독서 소외인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5.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독서 문화 진흥사업) 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애 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등 도서관 행사
3. 백일장, 독서감상 공모전,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4. 취약계층 대상 책 배달 및 책 꾸러미 대여 서비스
5. 직장과 지역에 독서모임 장려 및 지원
6. 다문화가정 독서 접근성 확대사업
7. 그 밖에 독서 문화축제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